

공무원 외부강의등 신고여부 특정감사결과 보고



감 사 실

공무원 외부강의 등 신고여부 특정감사 결과 보고

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거 우리구 공무 원의 외부강의 등 적정신고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보고임.

[감사실-4466(2018.9.18.)호와 관련]

I 근 거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10조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제15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
- O 「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6조

Ⅱ 감사개요

- **○** 감사기간 : 2018. 10. 15. ~ 10. 26.(10일간)
 - ※ 사전자료수집(관련기관 자료요청) : 2018. 10. 1. ~ 10. 12.(10일간)
- O 대 상 :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전 공무원
- 조 사 반 : 청렴감사팀장 외 1명
- 범 위: 2017.7.1. ~ 2018.9.30. 기간중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건
- O 내 용
 -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초과 수령 여부
 -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 신고사항 이행 실태
 - 지나친 외부강의 등으로 직무수행 소홀 여부 점검 등
 - 외부강의 요청 기관(단체)에 대한 우리구 공무원 실시사항 조회로 신고누락 방지

Ⅲ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

□ 총 평

-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의거 '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 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, 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'는 규정에 따라 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,
- 매년 지속적인 홍보 및 감사 실시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 온 바, 일부 신고 지연은 발생하였으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 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이행에 적정을 기하는 등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볼 수 있겠음.
- 그러나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신고절차 수시 공지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함.
- 2018. 1. 17.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2018. 4. 17.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따라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2018. 6. 29.자로 일부 개정하여,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사후 보완신고 기간을 연장하였음.
- 향후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누락 등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코자 함.

□ 외부강의등 신고 및 겸직허가 현황

(단위 : 인원/건수)

구 분	계	학 교 강 의	협회(단체) 강의 등	위원회	기 타 회의 등	비고
기 신 고	14 / 36	3 / 3	5 / 8	4 / 12	8 / 13	
신 고 제 외 대 상 신 고	5 / 8	1 / 1	1 / 2	3 / 4	1 / 1	국가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
계	18 / 44	4 / 4	5 / 10	7 / 16	9 / 14	

[※] 일괄신고건은 1건으로 산정

□ 주요 사례

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누락 여부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, 제2항]

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<u>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</u>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**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**.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3항, 제4항]

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 또한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-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사전신고가 원칙임. '외부강의등'이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을 의미하며,
-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'직무관련성'이 있고, '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'이거나 '회의 형태'인 경우로 신고누락사항은 없음.

▷ 향후계획

•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에 대해 사전신고 누락지연되지 않도록 지속관리

✓ '외부강의등 신고' 체크 포인트

- ① 직무관련성 ②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회의등
- ③ 강의·강연·기고등 ④ "대가를 받지 않아도" 신고
- ⑤ "사전" 신고 ⑥ 사전신고 곤란하면 2일 이내 사후 신고, 보완시 5일 이내
- ⑦ 국가·지자체 요청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
- ⑧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·위촉되어 회의에 참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.(시설운영위원회, 장기등급요양판정위원회등)

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여부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]

공무원은 <u>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</u> 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

☑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(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)

구 분	전직원(직급(비고		
상한액	1시간	최대(1시간초과시)	강의등 1시간	
	400천 원	600천 원	기고 1건	

-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.
-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며,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기관으로부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수령 가능.(중복수령 불가)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6항]

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- 위 대가기준은 **사례금 상한액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** 우리 구 행동강령 개정('18.6.29.)으로 상한액을 조정하였으며, 대상기간중 사례금은 총 18명 44건 6,300천원으로 기준초과 내역은 없음.

▷ 향후계획

대상기관(단체)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 지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

√ '외부강의등 사례금' 체크 포인트

- ① 외부강의는 반드시 관련기관의 요청공문에 근거함. (개인적인 전화나 e-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요청 행위 금지)
- ② 사례금 지급여부 및 대가기준 초과 사례금 여부 파악
- ③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후 반환

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소홀 여부

[외부강의 관련 복무 준수]

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공무원의 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,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만 천용하고 근무 시간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함.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출강하여야 하고 '소속부서의장'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휴가·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함.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9항]

공무원은 **월 3회를 초과**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참석자는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한 경우 실시 하였고 기타 근무시간 외 활용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직무수행 소홀사항은 없음.
-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3명이 있으나 불가피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수행으로 볼 수 있고, 다만 구청장 미승인건이 1건 있음.

▷ 향후계획

- 부서장은 외부기관(단체) 강의 등 요청시 관련공문 검토로 직무수행 소홀 사항이 없도록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☞ 사전신고시 요청기관 공문 반드시 첨부
- 외부강의등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고 직무상 불가피할 경우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**사전 검토·승인 관리 강화**

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의 범위

- ☑ 공무원이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·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☞ 단,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제외
- ☑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 등을 전달하는 형태
- ☑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님.